

의안번호	2216719
의 퇴 인	서영교 의원
회 답 일	2026. 3. 25.
추계번호	26C0811

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 고
1	안 제11조 (인구구조 변화 대응 제도 정비)	(제1항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·경제적 제도 정비에 노력하여야 함 (제2항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돌봄인력 등 각 분야의 인력 수요 파악 및 부족 인력 양성, 그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다변화되는 주거수요에 대응하는 주택 공급 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교육인프라 개편, 병력자원 감축 대비 체계 마련 등 사회 전반적 제도정비방안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함	의무규정
2	안 제13조 (중장년 고용과 소득보장)	(제1항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함 (제2항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제도 등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민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	의무규정
3	안 제20조 (인구감소·지역 소멸 대응)	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특화된 발전 정책을 수립하고 해당 지역의 인구회복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	의무규정
4	안 제21조 (과학기술혁신 등 미래대응)	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혁신으로 인한 급격한 생활방식의 변화에 대응하여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등 과학기술혁신이 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	의무규정
5	안 제25조 (인구관련 예산 사전협의 및 의견 제출권) 제4항	인구미래위원회 위원장은 기존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계획에 포함된 인구관련 예산사업을 분류하고 현황 조사 및 평가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전산망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함	의무규정
6	안 제28조 (인구미래위원회 특별회의)	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정책 수립·시행과 관련 현안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인구미래위원회 특별회의를 둠 ※ 특별회의의 위원은 인구미래위원회 위원 중에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로 함	의무규정
7	안 제31조 (시·도 인구미래 위원회)	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또는 특별자치도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의 인구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인구미래위원회를 둘 수 있음, 다만 시·도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시·도위원회의 기능을 대신 하거나 시·도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음	재량규정
8	안 제32조 (인구정책책임관의 지정 등)	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해당 기관의 인구정책책임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전담인력을 두어야 함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1조 (인구구조 변화 대응 제도 정비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13조 (중장년 고용과 소득보장)	
3	안 제20조 (인구감소·지역 소멸 대응)	
4	안 제21조 (과학기술혁신 등 미래대응)	
5	안 제25조 (인구관련 예산 사전협의 및 의견 제출권) 제4항	
6	안 제28조 (인구미래위원회 특별회의)	
7	안 제31조 (시·도 인구미래 위원회)	
8	안 제32조 (인구정책책임관의 지정 등)	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현행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에 명시된 정책의 범위를 인구구조 변화, 지역상생·미래대응까지 확대하는 내용
 - 동 개정안의 조항 중 현행법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항은 개정안 시행에도 불구하고 기존 사업이 유지될 수 있고, 일부 조항의 경우 개정안 시행 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그 여부 및 규모를 추계하기 어려움

- 전부개정안의 조항 중 일부는 정책의 범위를 기존 ‘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’에서 ‘인구구조 변화, 지역상생, 미래대응 등’으로 변경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는 그 여부 및 구체적인 정책의 내용을 알 수 없음

[표 1] 현행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및 전부개정안의 유사·동일 조항

현행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	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」
제7조(인구정책)	안 제7조(인구정책 등)
제8조(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)	안 제8조(자녀의 출산과 돌봄체계 강화)
제9조(모자보건의 증진 등)	안 제9조(건강관리 및 정보제공)
제10조(경제적 부담의 경감)	안 제10조(경제적 부담의 경감)
제11조(고용과 소득보장)	안 제12조(고용 및 일자리 정책)
제12조(건강증진과 의료제공)	안 제14조(건강증진과 의료제공)
제13조(생활환경과 안전보장)	안 제15조(생활환경과 안전보장)
제14조(여가·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)	안 제16조(여가·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등)
제15조(평생교육과 정보화)	안 제17조(평생교육과 정보화)
제16조(취약계층노인 등)	안 제18조(취약계층노인 등)
제19조(고령친화적 산업의 육성)	안 제19조(고령친화적 산업의 육성)
제20조(저출산·고령사회기본계획)	안 제23조(인구정책 기본계획)
제21조(연도별 시행계획)	안 제24조(연도별 시행계획)
제23조(저출산·고령사회위원회)	안 제27조(인구미래위원회)
제23조의2(위원회의 사무기구)	안 제29조(인구미래위원회의 사무기구)
제28조(전문인력의 양성)	안 제34조(전문인력의 양성)
제29조(조사 및 연구)	안 제35조(조사 및 연구)
제30조(민간의 참여)	안 제36조(민간의 참여)
제30조의2(인구의 날)	안 제37조(인구의 날)
제31조(국제교류의 활성화)	안 제38조(국제교류의 활성화)
제32조(지원)	안 제39조(지원)

- 안 제11조·제13조·제20조·제21조·제25조·제28조·제31조·제32조의 경우 현행법에 유사 조항이 없는 내용이므로, 개정안 시행 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는 추계에 필요한 정보의 부재로 합리적인 추계가 어려움
- (안 제11조·제13조·제20조·제21조·제25조) 개정안 시행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 대응하기 위하여 사회·경제적 제도를 정비하고, 관련 인력을 양성하며, 주택, 교육인프라, 병력자원, 중

장년 고용·소득보장, 인구감소·지역소멸, 과학기술혁신 등의 분야에서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부재하여 추가재정소요 발생 여부와 규모 등을 알 수 없음

- (안 제28조) 개정안에 따라 인구미래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되는 인구미래위원회 특별회의를 설치할 경우, 민간 위원에 대한 수당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는 인구미래위원회가 개최하는 회의 외에 추가로 개최될 특별회의의 개최 빈도 및 위원의 구성 등 세부 내용을 알 수 없음
 - (안 제31조~제32조) 개정안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인구미래위원회를 설치하고,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인구정책책임관을 지정하며, 전담 전문인력을 둘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는 설치될 인구미래위원회의 수와 구성, 전문인력 배치를 위해 추가로 채용해야 할 인력의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
 - － 안 제31조는 인구미래위원회 설치를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며, 유사 기능의 위원회가 있는 경우 신규 설치 없이 해당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, 현 시점에서는 개정안 시행에 따라 추가로 설치될 위원회의 수와 구성을 알 수 없음
 - － 안 제32조는 인구정책책임관과 전담 전문인력의 지정 및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, 현 시점에서는 추가 인력 충원 필요성 등을 알 수 없음
-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김우림	이진우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우림	02-6788-3738	wrkim@nabo.go.kr